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31776 손해배상
원 고 1. 김○○
2. 조○○
피 고 강○○
판 결 선 고 2011.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조○○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

11. 3.경 원고들이 공모하여 피고에게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가하는 한편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 김○○에게 금 20,000,000 원, 원고 조○○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남균